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사업장 소재지 (우편번호)				
	대표자명		전화번호		전자우편
신기술·서비스	명칭				
	유형	[] 기술인 경우 [] 서비스인 경우 []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			
	주요 내용				
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사유	[] 1.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맞는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1항제1호)				
	[] 2.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1항제2호)				
	[] 3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1항제3호)			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나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다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시험·검증의 방법 라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, 기간 및 규모 마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	2.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
	3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가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
	4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
	5.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
	6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
	7.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환경·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·처리에 관한 자료

처리절차

